

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---

### 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2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.

3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다만, 금번에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(아래 밑줄 친 사항)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\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”를 참고해 주십시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1년 1.4(0시) ~ 2021년 1.17(24시)까지

○ 대상 지역 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1)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

- 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홀덤펍, 파티룸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**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**

2)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3)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식당·카페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4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, 실내체육시설, 직업훈련기관·학원·교습소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5)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6) 모임·행사
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  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
\*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**붙임 6.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7) 종교시설

- 대상 시설 : 종교시설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7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8) 고위험사업장

-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8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9) 교통시설

- 대상 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 9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10) 국공립시설

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  - \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11) 아파트 내 편의시설

-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, 카페, 독서실,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

12) 주민센터

-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
13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
 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  - 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14) 스포츠 관람

- 10% 이내로 관중 입장 가능

15)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 - \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-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

#### 4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 -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4개 시도



주무관	<b>강재희</b>	행정사무관	<b>이성경</b>	생활방역팀장	<b>김정숙</b>	전략기획반장	<b>손영래</b>
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<b>이기일</b>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<b>강도태</b>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부장	<b>권덕철</b>		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 
중앙사고수습본부-41** 접수 보건재난대응과-68 (2021. 1. 4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[jaehuekang@korea.kr](mailto:jaehuekang@korea.kr)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